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82호
- 나. 제출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 2.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으로 개정(안 제9조)
- 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9조)

라. 청년의 구정 참여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정에 반영된 정책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4)

####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3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함에 따라 단체 활동 경험이 없는 개별 청년에게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함.
- 아울러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에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실질적으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청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당연히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년은 기존 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청년의 정책 참여는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기존 세대와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자료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2.>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금융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 ·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 실무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